

## 가상계좌 제휴 및 중계업무 계약서

주식회사 하나은행(이하 "은행" 이라 합니다)과 \_\_\_\_\_(주) (이하 "중계회사"이라 합니다)은 가상계좌관련 전자금융 업무제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합니다.

### 제 1조(목적)

본 계약은 "은행"과 "중계회사"가 가상계좌를 활용한 전자금융서비스의 중계업무 및 가상계좌 마케팅 등의 제휴에 대한 내용을 명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

### 제 2조(용어의 정의)

본 계약에서 정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습니다.

1. 제휴기관: "은행"과 가상계좌업무 제휴를 통하여 부여된 가상계좌를 대고객 등의 업무에 이용하는 기업 또는 단체.
2. 가상계좌: "은행"과 제휴한 "제휴기관"의 모계좌에 종속하는 자계좌로서, "제휴기관"의 고객에게 부여한 계좌로 등 가상계좌의 예금주는 "제휴기관"임.
3. 중계시스템: "은행"과 "제휴기관"의 업무를 전산처리함에 있어, "중계회사"가 "은행"의 승인 하에 "제휴기관"에 실시간 전문으로 중계 및 대행하기 위하여 구축한 시스템
4. 중계업무: "중계회사"가 중계시스템을 통하여 "제휴기관"에 데이터 전송 등을 제공하는 행위
5. 전용브라우저: 가상계좌의 거래내역을 "제휴기관"이 실시간 조회할 수 있도록 "중계회사" 가 제공하는 인터넷 브라우저.

### 제 3조(중계업무의 범위)

본 계약에 의해 처리되는 업무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.

1. 입금업무 중계: "은행"이 "제휴기관"에 부여한 가상계좌에, "제휴기관"의 고객이 입금한 거래 내역을 "은행"으로부터 전송받아 "중계회사"의 중계시스템을 통해 제휴기관에 데이터를 전송하는 업무
2. 송금업무 중계: 제휴기관의 입금모계좌에 입금된 자금을 제휴기관이 "중계회사"의 전산시스템을 통해 "은행"에게 송금 요청을 하는 업무
3. 조회업무 중계: 거래내역조회 및 각종 조회의 중계업무.

### 제 4조(중계업무의 처리시간)

- ① 업무처리 시간은 원칙적으로 "은행"의 가상계좌서비스 업무시간(00:20~23:40)이내로 하며, 원활한 업무운영을 위하여 "은행"과 "중계회사"가 실시하는 시스템 유지 및 보수 등에 소요되는 시간은 업무처리 시간으로 간주합니다.
- ② 자금정산은 평일(휴일포함)기준으로 기본형(16:30, 23:40), 지정형(기본형+추가), 리얼타임형(실시간 입금)중 제휴기관과 협의된 시간으로 합니다. 다만,"은행"의 시스템사정, 경영 정책상의 사유 등에 의하여 동 정산시간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"중계회사"에게 사전 통보하기로 합니다.

### 제 5조(중계업무의 운영지원)

- ① "은행"과 "제휴기관"간의 가상계좌서비스가 "중계회사"의 중계시스템을 통하여 연결된 경우 "중계회사"는 "제휴기관"의 시스템 개발 및 운영 지원에 최선을 다하여야 합니다.
- ② "은행"은 가상계좌서비스의 원활한 지원을 위하여 "중계회사"의 중계시스템을 통하여 연결된 "제휴기관"의 가상계좌 거래자료를 "중계회사"에게 제공하기로 하며, "제휴기관"이 지정한 계좌로의 송금의뢰를 "중계회사"의 전산시스템을 통해 요청할 경우 이를 처리하기로 합니다.
- ③ 본 계약상의 업무이행과 관련하여 "은행"과 "중계회사"는 전용선으로 연결하고 "중계회사"와 제휴기관은 TCP/IP(인터넷망/전용선)방식, 전용선 또는 가상계좌 전용 Browser방식으로 연결하며, 그 연결방식은 제휴기관과 준법감시인 심사필 제2016-약관-165호(2016.4.18)

협의하여 결정합니다

- ④ “은행”과 “중계회사”는 시스템이나 서비스의 변경, 추가, 삭제 또는 보안관련 개선 등이 필요한 경우 상호 협조하기로 합니다
- ⑤ 기타 서비스 운영과 관련된 세부적인 사항은 “은행”과 “중계회사”가 따로 협의하여 결정합니다.

### 제 6조(중계업무의 책임범위)

- ① 입금내역의 중계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고객에 대한 분쟁 및 민원에 대해서는 신의원칙 에 따라 상호협력하되 귀책사유가 있는 당사자의 책임으로 해결하여야 합니다.
- ② “은행”의 전산시스템 영역범위 내의 문제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는 “은행”이 부담하고 “중계회사”의 전산시스템 영역범위 내의 문제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“중계회사”가 부담하기로 합니다.
- ③ “중계회사”는 “은행”과 “제휴기관” 간의 가상계좌 서비스 데이터 중계업무를 위하여 “은행”과 전용회선을 설치, 관리하여야 하며, 이에 따르는 비용은 “중계회사”의 부담으로 합니다.
- ④ 본 중계서비스 지원을 위한 시스템개발 및 구축은 “중계회사”의 부담과 책임으로 운영합니다
- ⑤ “중계회사”는 제휴기관에게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전산시스템과 전문인력을 보유하여야 하며, 고객응대를 위한 전문 상담인력의 배치 등을 통해 민원발생의 최소화에 노력하여야 합니다.

### 제 7조(수수료 배분기준 및 징수방법)

- ① 본 계약과 관련하여 제휴기관으로부터 취득한 수수료의 총액은 “중계회사”의 가상계좌 중계업무 및 마케팅 여부에 따라 다음과 같이 배분하기로 합니다.
  - 1. “은행”이 마케팅하고, “은행”과 “제휴기관”간 서비스를 “중계회사”의 중계시스템에 의하여 중계하는 제휴기관 업무  
“은행” : “중계회사” =        :
  - 2. “중계회사”가 마케팅하고, “은행”과 “제휴기관”간 서비스를 “중계회사”의 중계시스템에 의하여 중계하는 제휴기관 업무  
“은행” : “중계회사” =        :
- ② “은행”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“중계회사”가 받을 수수료를 익월 8일(공휴일인 경우 익영업일)까지 “중계회사”에게 통지하고 익월 10일(공휴일인 경우 익영업일) “중계회사”가 지정하는 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합니다.

### 제 8조(계약효력 및 계약기간)

- ① 이 계약은 계약 체결과 동시에 그 효력이 발생하며, 그 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1년 간으로 합니다. 다만, 지휘감독기관의 승인이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그 승인이 있는 날로부터 발효합니다.
- ② 본 계약의 유효기간은 계약일로부터 1년으로 하며, “은행”은 본 계약 만료 2개월 전까지 그 사실을 “증권”에 통지합니다
- ③ 제2항의 통지에는 “증권 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연장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할 수 있으며, 해당 기간 내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본 계약이 1년간 연장되는 것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”는 내용을 포함하기로 합니다.
- ④ “증권”이 제2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“연장을 원하지 않음”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 본 계약은 동일한 조건으로 1년간 연장됩니다.

### 제 9조(계약해지)

- ① 본 계약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해지할 수 있습니다.
  - 1. 상호간에 서면 합의한 경우
  - 2. 계약상대방이 계약사항을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않는 경우
  - 3. 계약상대방이 파산, 회생, 기업개선약정을 신청 또는 체결하거나, 채권자 또는 법원에 의해 관리인 등이 선임되는 등 신용이 급격히 악화된 경우
  - 4. “은행”의 경영정책상의 사유, 관련법령의 제·개정, 금융감독기관의 지시 등에 의하여 본 계약의 이행이

불가하게 된 경우

5. 기타 “은행” 또는 “중계회사”가 금융감독기관이 정한 금융관계 법규위반 등으로 신용 질서를 문란케 한 경우
- ②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경우 별도의 최고 없이 상대방에 서면통지로서 즉시 해지할 수 있는 것으로 하되, 전항 2호인 경우에는 사전 이행최고 등을 거쳐 이행이 없으면 그 사유를 명시하여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며, 통보 1개월 후에는 해지할 수 있습니다.

#### 제10조(비밀 및 보안유지)

- ① “은행”과 “중계회사”는 이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예금주의 비밀보장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합니다
- ② “은행”과 “중계회사”는 본 계약체결 및 이행으로 취득한 상대방의 비밀 및 정보를 계약기간 중에는 물론 계약종료 이후에도 상대방의 사전 서면 동의없이 제3자에게 유출하거나 타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, 외부유출로 인한 민형사상 일체의 문제는 유출한 측에 책임이 있으며 유출한 측은 이에 따른 비용 및 손해에 대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배상 의무를 집니다.
- ③ “은행”과 “중계회사”는 상호 정보교환을 통하여 인지 또는 획득한 제반사항을 본 업무처리 이외의 목적에 사용하거나 외부에 유출하여서는 아니 됩니다
- ④ “은행”과 “중계회사”는 각자의 지점 또는 이에 준하는 범위내에서 인가되지 아니한 자가 이 계약에 의한 가상계좌 전산망에 침투하지 못하도록 보안체제를 유지해야 합니다

#### 제11조(손해배상책임)

“은행”과 “중계회사”는 본 계약상의 제 의무위반, 고의 또는 과실, 귀책사유에 의한 계약해지등 으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상대방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.  
단, 귀책사유가 없는 불가항력적인 경우에는 그 책임을 면합니다

#### 제12조(면책사항)

- ① “은행”의 책임이 아닌 통신기기 및 회선장애 또는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한 업무지연이나 불능에 대하여 “은행”은 전부 또는 일부의 책임을 면할 수 있으며, 쌍방이 합의하거나 정한 방법에 따라 정당하게 처리한 사항에 대하여는 “은행” 과 “중계회사”는 그 책임을 면하기로 합니다
- ② 본 계약에 의한 업무 처리시 “중계회사”의 과실 및 전산오류로 인하여 제휴기관등 제3자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“중계회사”는 이로 인하여 “은행”에게 생긴 손해를 배상합니다.

#### 제13조(양도 및 재위탁 금지)

본 계약의 모든 권리와 의무는 사전에 상대방의 서면 동의 없이는 제3자에게 양도, 위임, 재위탁, 담보제공 등을 할 수 없습니다.

#### 제 14조(신의성실 및 청렴계약)

- ① “은행”과 “중계회사”는 본 계약을 신의성실원칙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이행 하여야 합니다.
- ② “은행”과 “중계회사”는 본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상대방의 계약 관련 임직원에게 금품, 향응 등 접대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아니하며, 동 제공사실이 드러날 경우 계약해지등 불이익 처분과 관련하여 민형사상 일체의 이익을 제기하지 않기로 합니다

#### 제15조(준용사항)

업무와 관련된 각각의 대상계좌에 대한 개별적인 업무처리는 대상예금의 거래약관을 준용하고 “은행”이외의 타 금융기관에서의 자금이체는 금융결제원의 전자금융공동망 (타행환공동망, CD공동망 포함) 업무규약 및 세부 처리지침을 준용하기로 합니다

#### 제16조(비상계획수립)

- ① “중계회사”는 가상계좌서비스를 중계함에 있어 “중계회사”의 전산시스템이 화재, 홍수, 해킹 등의 재난에 의하여 서비스가 중단되거나 파산, 회사정리 등 도산으로 인하여 서비스가 중단되는등 형태별 비상사태에 대비한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여야 합니다

- ② “중계회사”는 “은행”과의 중계업무를 운영함에 있어 재난 상황에도 업무가 가능하도록 “중계회사”의 전산시스템에 대한 백업장비를 확보하여 운영하여야 하며, “은행”의 백업자료 요청시 제공하여야 합니다.
- ③ “은행”은 “중계회사”가 수립한 비상사태 대비 운영계획에 대해 주기적(분기1회)인 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“중계회사”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
- ④ “은행”은 “중계회사”가 수립한 비상계획에 대한 모의훈련을 실시할 수 있으며 모의훈련 결과 문제가 발생될 경우 비상계획을 보완하여“은행”에 보완사항을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

**제17조(관리감독)**

- ① “은행”은 전자금융감독규정 및 관련금융감독기관의 방침에 따라 “중계회사”의 업무운영상태 및 보안상태 등에 대하여 수시 또는 주기적으로 점검 및 자료를 요청을 요구할 수 있으며, “중계회사”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.
- ② “은행”은 “중계회사”에 대한 재무건전성을 1회이상 평가하여 재무상태 악화에 따른 도산에 대비하고 주요 경영활동에 대해 모니터링 실시할 수 있고, 서비스 품질수준 평가를 위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, “중계회사”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.
- ③ “중계회사”는 금융감독원장이 전자금융업무와 관련한 자료를 요청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
- ④ “중계회사”는 “은행”또는 금융감독기관의 관리감독 점검결과 문제가 발견될 경우 이를 즉시 시정하고 그 시정내용을 “은행”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.

**제 18조(기타)**

본 계약업무 진행 중에 감독행정기관(유관기관 포함)의 지시 또는 요청에 의해 관련업무 에 대한 재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상호 협의하여 업무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.

**제 19조(합의관할)**

이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한 소송에 대한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.

이 계약의 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2통의 계약서를 작성하여 기명날인하고 각각 1통씩 보관하기로 합니다.

20 년 월 일

"은행"  
서울시  
주식회사 하나은행  
은행장 (인)

"중계회사"  
서울시  
주식회사 0000  
대표이사 (인)